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19가합759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024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19가합75931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양선화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기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4. 19. 접수 제3499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332,420,0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420,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간 2015. 2. 25.부터 2016. 2. 24.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증기간은 2019. 2. 22.까지 연장되었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C이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15. 2. 25. D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8. 10. 29. C의 실질적 경영자인 B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자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9. 1. 24.자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부실처리를 하였다.

2) D은행은 2019.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10. D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257,971,971원(=대출원금 2억 5,500만 원 + 이자 2,971,9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차전49912)은 2019. 7. 22.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022,223원 및 그 중 257,971,9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다.

다. B의 처분행위 등

1) B은 2018. 11.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순가액을 46억 원(승계채무액 30억 원)으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지 E 및 F 토지(이하 'G리 토지'라 한다)의 순가액을 16억 원(승계채무액 10억 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가 B에게 승계채무액을 반영한 순가액의 차액인 10억 원[=(46억 원 - 30억 원) - (16억 원 -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3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가 2019. 4. 19. 이를 말소하였다.

3) B은 2019. 3.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3을 15억 3,300만 원에 매도(대출금 10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잔금 5억 3,300만 원을 2019. 4. 22.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또 다른 공유자인 H, I는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2/3를 30억 6,700만 원에 매도(대출금 20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10억 6,700만 원을 2019. 4. 13.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는 2019. 3. 13. B의 아들 J가 사내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G리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대출금 10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6억 원을 2019. 4. 15.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해 4. 22. K에 김천시 L건물 M호, N호, O호, P호, Q호(이하 'L 건물'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2019. 4. 19. 이후인 같은 해 6. 5. 제주시청의 2019. 4. 4.자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구상채권이 더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상채권인 332,420,0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420,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2) 설령 위와 같은 가액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2018. 11. 27.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19. 3. 13.자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2018. 11. 27.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대상의 특정

1)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에 2019. 3.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B과 피고 사이에 2018. 11. 27.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B과 피고 사이에 2018. 11. 27.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해 12. 3.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긴 했으나, 그 등기원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아니라 2018. 12. 3.자 매매예약인 사실, ②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B의 채권자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가 2019. 3. 27.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가등기는 2019. 4. 19. 말소된 사실, ③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 후 R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져서 우선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④ 피고는 2019. 4. 19.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2019. 3.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고, B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사해행위는 2019. 3. 13.자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3. 13.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는 2015. 2. 25. C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이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연대보증인인 B은 2018. 10. 29.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부실처리를 한 사실, ③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9. 6. 10. D은행에 257,971,97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B은 원고에게 C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가 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2016. 2.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후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연대보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기한을 2019. 2. 22.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판단 기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3. 13.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20. 1. 9.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적극재산	금액(원)	증거자료
1	부천시 S 토지 및 지상 건물	5,035,196,700	갑 제12호증
2	인천시 부평구 T아파트 U호	506,000,000	갑 제13호증
3	강원 영월군 V, 같은 군 W, 같은 군 X, Y	55,242,650	갑 제14호증
합계		5,596,439,350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 상당액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B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Z(이하 'Z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AA 유한회사에 대한 2020. 5. 1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극재산	금액(원)	증거자료
1	R에 대한 채무	1,276,203,054	갑 제15호증
2	AB에 대한 채무	100,000,000	갑 제16호증
3	Z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3,392,000,000	갑 제9호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4	AC에 대한 채무	594,791,666	갑 제9, 18호증
5	AA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310,730,659	갑 제17호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6	AD에 대한 채무	700,000,000	갑 제19호증
합계		6,373,725,379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순번 1의 R에 대한 채무의 경우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E의 자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피고는 순번 4 AC에 대한 채무와 순번 6 AD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AC은 B의 전처로서 B과 2012. 9. 10.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AF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B은 AC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4,791,666원의 합계 594,791,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B은 2018. 3. 13. AD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4 AC에 대한 594,791,666원의 채무와 순번 6 AD에 대한 7억 원의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의 합계액(6,373,725,379원)이 적극재산의 합계액(5,596,439,350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 당시 B은 채무초과 등 신용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원고의 연락을 회피한 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B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B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G리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는 AC이 신청한 청구금액 594,791,666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 가압류에 의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② 피고는 2018. 12. 3.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R가 2018. 12. 19. B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를 하였고, 2019. 3. 27.에는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였으며, 2019. 4. 4.에는 제주시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③ R의 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는 2019. 4. 16.에, 제주시청의 압류등기는 2019. 6. 5.에 각 말소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말소되기도 전인 2019. 3. 1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2018. 11. 27. 피고의 요구에 따라 AG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9. 4. 10. B의 채권자인 R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4억 원을 대신하여 피고 소유의 L 건물을 B의 아들인 J가 사내이사로 있는 K에게 이전하는 등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대금을 B에게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교환계약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B에게 전부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⑤ B은 이 법정에서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에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빨리 사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제주시청의 압류등기가 2019. 4. 4.에 마쳐진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 4. 19. B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그 후인 2019. 6. 5. 제주시청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3. 13. 체결되었고, 그 이후인 2019. 4. 4. 제주시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6. 5. 말소된 것으로서, 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한홍, 판사 최태진, 판사 강대현

별지

목 록

1. 제주시 AH 전 1223㎡

2. 제주시 AH

 [도로명주소] 제주시 AI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숙박시설

 지1층 203.96㎡

 1층 297.83㎡

 2층 304.13㎡

 3층 297.84㎡

 4층 293.97㎡. 끝.

